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이 석 재¹⁾

한국전산원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a) 강간통념수용도를 측정하는 척도(Burt, 1980)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고, (b)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c) 강간통념의 개념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66명)과 남자 죄수(54명)를 대상으로 그들이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정도와 아울러 그들의 성행동 및 성폭력 경험을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자료의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강간통념척도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으며, 강간통념은 6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격형,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피해자의 경솔, 피해자의 강간 정당화 및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강간통념은 성행동 및 성폭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대학생과 죄수들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피해자의 성격형,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에 대한 통념이 성행동 또는 성폭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죄수의 경우 이러한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조사집단에 따라서 강간통념과 성행동 및 성폭행의 관계에 내재하는 심리과정의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심리과정에 대한 대안적 해석들이 제시되었다.

통계청(1998)이 발표한 사회지표에 따르면, 1997년 형법범 중에 절도, 살인, 강도, 강간, 폭행과 상해 등의 주요 범죄 발생건수에서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였으며 검거율은 94.9%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전체 범죄피해건수 중에 신고되지 않은 주요 범죄의 피해건수율은 평균 76%에 이른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강간범죄의 경우 실제 발생 비율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간범죄의 주된 특징은 가해자가 면식범인 비율이 높고(사건의 50% 이상), 대부분 남자라는 점이다(Berry, 1995;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7). 성범죄는 피해사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거나

경찰에 보고되지 않는 대표적인 범죄로서(Bowker, 1979)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고통이 즉시적일 뿐만 아니라 영속적으로 나타난다.

Burgess와 Holmstrom(1979)은 성폭행²⁾을 당한지 4

2)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을 풍속을 해하는 죄(음행매개(淫行媒介), 음서 등의 배포와 제조, 공연음란 등), 약취와 유인의 죄(영리를 위한 약취, 유인, 매춘 등),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권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등), 강도강간의 죄, 특수강도 강간내지 통신매개체이용음란의 죄 등을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형법에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죄(형법 제297조)이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힘의 행사나 해악의 통고이며, 강간이란 이성간의 성기 결합을 의미한다(이재상, 1994). 본

1) 현재 한양대학교,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강사임.

년에서 5년이 지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그들이 성폭행을 경험한 후 정상으로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면접대상자들의 37%는 수개월 내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응답하였고, 37%는 회복되었으나 수년간 지속되었고, 나머지 26%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강간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경험하는 대표적이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임을 밝혔다(Foa, Olasov, & Steketee, 1987). PTSD 증후를 예언하는 주된 변인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의 강간 경험이다(Kilpatrick et al., 1989). 강간 피해자들은 죄책감, 부끄러움, 의욕상실, 자기혐오, 열등감, 남성기피, 불면 등의 단기적 후유증과 자포자기, 자살시도, 낮은 자아존중감, 건망증, 고립감, 성불감증, 성 죄의식 등의 장기적 후유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알콜중독이나 약물남용의 이차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에서 강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1988년 2월 강간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가해자의 혀를 깨문 사건으로 여성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의 대상이었다는 사실보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식당 여주인이라는 점, 가해자보다 두 살이 많다는 점, 밤에 늦게 다닌 점, 이혼 경력 등이 피해자의 자위권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쟁점의 대상이었다. 이 사례는 성폭행의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자나 강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그릇된 신념이 사법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간에 대한 태도와 그릇된 신념은 판사나 변호사가 강간 피해자를 법절차에 따라 대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해사실을 조사하는 과정, 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하고 간호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ss et al., 1994; Warshaw, 1988). 사

람들은 강간 피해자가 선정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면, 가해자의 책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다고 보았다(Lewis & Johnson, 1989).

강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영향요인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성적 욕구와 같은 생리심리학적 요인(Ellis, 1991), 분노 등의 심리적 요인(Berkowitz, 1993),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표현,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역할 등의 사회문화적 요인(Groth, 1979; Lisak, 1991; White & Koss, 1993) 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간에 대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통념(rape myths, 이하 “강간통념”이라 함)이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강간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본다. 남성이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당연시하거나 성폭행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성폭행의 피해자가 원만한 사회성과 적응성을 키우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끼 있는 여자들은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다”,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등과 같이 여성의 성성(sexuality)이나 행동 등에 대한 그릇된 신념들은 여성을 성적 피해자로 만들뿐만 아니라 성적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편견을 만들고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공개하기보다는 숨기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Brown-miller, 1975). 그러나 이러한 통념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심리과정을 경험적으로 밝혀려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강간통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계가 있다. Feild(1978)는 강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일반시민, 경찰관, 강간범, 강간피해 상담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고 태도의 구조는³⁾ 사회계층별로 유

3) Feild(1978)는 강간행위, 강간피해자, 및 강간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들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신념을 나타내는 37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강간에 대한 태도는 정적, 인지적 및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자료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강간에 대한 태도가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요인은 강간을 막는데 있어 여성의 책임(요인1), 강간의 동기로서 성(sex)

연구에서 강간은 형법이 정하는 정의를 따랐으며, 성폭행은 성폭력을 행하는 행위로 보았다.

사하지만 강간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성별, 결혼여부, 인종이 강간에 대한 태도를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Feild는 강간에 대한 태도와 강간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⁴⁾ 강간통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Burt(1980)는 강간, 강간피해자, 강간범죄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강간통념의 수용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녀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강간통념을 가지고 있고, 대인간 폭행을 수용하는 정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은 강간통념의 예언변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강간통념의 기본구조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다. 또한, 강간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 강간통념이 성행동 또는 성폭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려는 경험적 연구가 미흡하였다. 최근 들어 성범죄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Burt(1980)가 다루지 않은 강간통념을 추가적으로 찾아내었다(예, Fitzgerlad, 1993; Kelly, 1988).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Burt의 척도를 확장하여 새로운 강간통념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먼저 새로운 강간통념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강간통념과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 태도와 성역할 변인들을 기준변인으로 선정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성폭행을 다루는 연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 성역할 고정관념(Burt, 1980; Feild, 1978) 등이 강간통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Burt(1980)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간통념과 정적인 상관

(요인2), 강간범에 대한 처벌(요인3), 여성이 강간을 촉발시키는 원인제공(요인4), 강간범의 정신건강(요인5), 남성의 영향력(power)행사 동기로서 강간(요인6), 강간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지각(요인7), 및 강간 중에 여성의 역할(요인8) 등이다.

4) 강간에 대한 태도는 강간행위, 강간 피해자 및 강간범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정의된다(Feild, 1978). 그러나 강간통념은 강간행위, 강간피해자 및 강간범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되고 고정관념적이며 거짓된 신념을 나타낸다(Burt, 1980). 본 연구에서는 Feild(1978)와 Burt(1980)의 정의를 따랐다.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강간통념척도는 이들 태도변인들과 정적인 상관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강간통념이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사고와 힘의 상대적 우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 생성되며 남성들이 여성을 폭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Groth, 1979; Koss et al., 1994). Brownmiller(1975)는 강간의 경우 성이 관여되지만, 강간은 단순히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적인 행위이며 권력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남성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더 수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Bem(1974)의 성역할척도에서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강간통념척도의 예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간통념척도와 조사대상자의 성행동 그리고 성폭행 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성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남성주도의 성역할에 대한 스크립트(scripts)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Muehlenhard & Linton, 1987). 강간범이나 조사대상인 대학생 가운데 성폭력을 해보았거나 또는 체포되지 않는 경우 강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남자들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다(Malamuth,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을수록 성행동과 성폭행을 해본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대학생과 사회의 안전성과 질서를 해한 죄수를 비교집단으로 하여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강간통념에 대해서는 두 집단을 직접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두 집단간 강간통념의 수용도 차이와 강간통념이 성행동 및 성폭행과 어떠한 관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는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에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 남학생으로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66명(연령: $M=22.8$, $SD=2.46$)과 서울과 서울근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자 죄수 54명(연령: $M=23.3$, $SD=1.73$)이 참가하였다. 죄수들 가운데 성범죄자는 6명이었고 나머지 참가자는 폭력, 강도상해, 상해치사,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조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대학생의 경우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규수업시간에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의 목적과 응답요령을 소개하였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당신이 평소에 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남성이나 여성의 성(性)이나 성관계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절대 비밀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지에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의 지시문을 자세히 읽으시고 각 질문에 솔직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대해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이 없이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성별, 나이를 설문지에 적도록 한다).

연구자는 조사대상자들이 응답을 마쳤다고 판단되었을 때,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였다. 죄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시와 아울러 형명, 형기, 범수를 적도록 하였다. 죄수에 대한 자료조사는 형무소의 상담원에 의해 5~10명 규모의 소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도구

연구자는 먼저 Burt(1980)가 개발한 강간통념 수용

척도의 10개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다음으로 성폭행과 관련된 문헌(예, Fitzgerald, 1993; Kelly, 1988; Koss et al., 1994 참고)과 인터넷 홈페이지(5)에 소개된 강간통념에 대한 예를 토대로 연구자는 17개의 문항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모두 27개의 문항이 만들어졌다.

조사질문지는 모두 6쪽으로 구성되었다. 첫 쪽과 2 쪽에는 지시문과 강간통념을 조사하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응답자가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강간통념 문항에 대해 9점 척도 상에 찬반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척도는 Likert형으로 “아주 반대”(1점)에서부터 “아주 찬성”(9점)까지 이었다. 통념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남자가 성행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돼”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다”,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와 같다.

2쪽으로부터 3쪽까지는 강간통념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준척도로서 대인간 폭력수용척도(Burt, 1980), 성역할 고정관념척도(Feild, 1978)가 제시되었다(세부문항은 부록 참고). 성역할 고정관념척도는 여성의 성역할과 행동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4쪽과 5쪽에는 예언타당도 검증의 기준변인으로서 조사대상자의 성행동과 성폭행 경험을 알아보는 30개의 문항이 있었다. 응답자의 성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인 성행동을 나타내는 27개 문항을 개발하였다(Zuckerman, 1973 참고). 예를 들면, “성행위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유혹하는 말을 하였다”, “손으로 자위를 하였다” 등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성폭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 문항을 개발하였다(“이성을 회롱하였다”, “이성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였다”, “이성이 원하지 않는 키스를 하였다”). 이들 성행동과

5) 국내의 경우 인터넷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성폭행”, “성행동”, “강간” 등의 주제로 관련 홈페이지를 찾았고(예, <http://aids.hallym.ac.kr>), 외국의 경우는 인터넷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sexual violence”, “rape”, “rape myths” 등의 주제로 관련 홈페이지를 찾았다(예, <http://www.d.umn.edu/cia/faculty/jhamlin/3925/myths.html>). 관련 홈페이지의 내용을 조사하여 강간통념을 설명하는 내용이나 소개된 강간통념을 수집하였다.

성폭행 경험을 묻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모두 4점 척도 상에 얻어졌다. 지난 6개월간 위의 3가지 성폭행을 해본 경험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1점), “1회에서 5회”(2점), “6회에서 10회”(3점) 그리고 “10회 이상”(4점)이었다. 이와 같이 성행동과 성폭행에 대한 응답은 해당 행동에 대한 경험의 여부(예, 아니오)를 묻는 양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빈도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후자의 방법이 집단의 차이를 더 민감하게 변별함을 보였다(Andersen & Broffitt, 1988).

조사지의 마지막 쪽에는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역할 척도의 성격특성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em(1974)의 성역할 척도를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한국 성역할척도(정진경, 1990)에서 남성성, 여성성 및 긍정성을 나타내는 60개의 성격특성들을 사용하였다. 각 특성들에 대해 참가자들은 얼마나 자신을 잘 표현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9점)까지의 Likert형 9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

결 과

강간통념척도의 분석

문항선정. 먼저 강간통념을 적절히 측정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문항의 선정기준은 문항간의 상관, 개별문항과 전체 문항 총점간의 상관 및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높이는 문항이었다. 전체 27개 문항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 Cronbach, 1951)를 높이기 위하여 7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 이러한 선정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된 문항은 모두 20개였다.⁶⁾ 최종 선

6) Burt(1980)의 10개 문항 가운데 8개 문항이 본 연구에서 선정하는 20개 문항에 포함되었다. 이들 8개 문항의 총점은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행동($r=.47$) 및 성폭력($r=.33$)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모두 $p<.001$). 그러나 이들 문항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나 이들 요인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들 문항을 별도로 다루어 분석하지는 않았다. Burt가 개발한 문항은 표 1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밝히는 6개 요인에 각각 속하였으며, 특히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통념을 나타내는 문항이 가장 많았다.

정된 각 문항의 점수는 전체 문항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33$ 에서 .67까지로 나타남).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87로 각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이 적절하였다(Nunnally, 1978).

강간통념의 구조분석. 다음으로 강간통념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척도에 대한 대학생과 최수 응답자들의 의견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varimax 방법을 사용하여 eigenvalues가 1 이상인 것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을 대상으로 scree plot(Cattle, 1966)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6개 요인이 의미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표 1 참고). 이들 요인은 강간통념척도 점수의 전체변량 가운데 64.6%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하되는 강간통념을 선정하는 결정치는 조사대상자수를 고려하여 .25로 하였다(Stevens, 1996).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요인에는 9개 통념이 유의미한 부하치를 보였다. 다른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보인 통념을 제외하는 경우, 요인 I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강간통념은 모두 4개였다. 이들 통념을 보면, 피해자의 성폭행 경험, 피해자의 성욕, 성경험, 성관계에 대한 평판 등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피해자의 과거 성경험’으로 해석되었다. 강간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한 평판이 나쁘다는 통념은 두 번째 요인에도 부하되었으나(.36) 제외되었고, 남자가 지극한 식사대접을 하면 여자는 섹스를 허용한다는 통념은 요인 I에도 높게 부하되었으나(.39), 두 번째 요인에 부하되는 정도가 더 컸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29.9%를 설명하였다.

요인 II에는 모두 5개의 통념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인 통념은 “여자가 친근감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78)이었다. 다음으로 여성의 특정 행동들이 끈성을 허락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통념들(예, 남자의 지극한 식사대접, 여자가 남자 집을 방문하는 것, 여자가 키스나 에무를 허용하는 것)과 남성의 성충동 정도를 나타내는 통념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이러

표 1. 강간통념의 요인분석

강 간 통 념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강간을 당하는 여성은 대개 이전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B)	.82					
성욕이 왕성한 여자들이 대개 강간을 당한다	.69		.37			
강간을 보고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그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성관계를 가졌다	.61			.45	.27	
대부분의 강간 피해자는 평소 성관계가 난잡하거나 평판도 좋지 않다	.61	.36				
여자가 친근감이 있게 남자를 대하는 것은 성적 접촉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이다		.78				
남자가 식사 등으로 여자를 지극히 대접하면 여자는 대개 섹스를 허락한다	.39	.72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와의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B)		.60	.53			
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55		.26		
여자에 비해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하여야 한다		.47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 만하다(B)			.76			
만일 여자가 목을 꺾이고 애무하다 사태를 견딜 수 없게 두어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면, 잘못은 여자에게 있다(B)			.74			
여자가 모임에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녀는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다른 남성들에게 '봉'이다(B)		.29	.64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돼"라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다			.51	.42	.38	
여자가 노브라, 짧은 스커트, 꼭 끼는 상의를 입은 것은 성피해를 자초하는 것이다(B)				.85		
끼있는 여자는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다	.25		.74			
보고된 대부분의 강간사태는 임신된 사실을 알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여성이 날조한 것이다			.27	.77		
강간을 보고하는 많은 여성은 상대에 대한 분노와 보복하려는 동기로 거짓말을 한다(B)			.31	.68		
많은 여자는 강간을 당하고 싶은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조성한다(B)	.35	.38				.70
대개 강간을 당하는 여자는 저소득 가정의 출신이다	.41					-.63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	.25	.31				.58
Eigenvalues	5.96	2.01	1.48	1.32	1.10	1.04
설명변량	29.9	10.1	7.4	6.6	5.5	5.02
Cronbach's α	.75	.75	.71	.69	.50	.45

주. 괄호안의 영문 글자 B는 Burt(1980)의 강간통념 수용척도 문항임을 나타내는 것임.

한 통념들은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 통념 가운데,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세 번째 요인에도 높게 부하되었으나 두 번째 요인에 의미적으로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의 10.1%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요인III에는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다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성전위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 모임에서 술에 취해 성폭

행을 당한 경우 등에 대한 통념이 .5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또한 남자의 성관계 요구에 대해서 여자가 거부하는 것은 실제로는 응낙을 의미한다는 통념도 속하였다. 이들 통념들은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여자에 있다는 것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의 7.4%를 설명하였다.

요인IV는 노출이 심한 여성의 의상은 성피해를 자초한다는 통념과 끼가 있는 여성은 늦은 밤에 혼자

길을 걷는 다는 통념을 포함하였다. 이 요인은 ‘피해자의 경솔’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변량의 6.6%를 설명하였다. 요인V는 성폭행 피해자가 치안당국에 피해사실을 보고하는 동기에 대한 통념으로서 피해자의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변인은 전체변량의 5.5%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VI에는 여자가 강간을 당하고 싶어한다는 무의식과 강간을 즐긴다는 통념과 아울러 피해자는 대개 저소득 출신이라는 통념이 포함되어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요인에 속하는 통념들은 요인 I과 요인II에도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하량은 낮았다. 요인VI는 전체변량의 5.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듯이 앞의 네 요인들의 내적일치도는 .70 수준으로 적절하였으나 나머지 요인으로서 피해자의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alpha=.50$)과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alpha=.45$)에 대한 통념의 내적일치도는 낮게 나타났다.

다른 척도 및 행동과의 관계

다른 척도와의 상관. 표 2에서 보듯이 강간통념척도의 총점은 대인간 폭력수용척도($r=.58$), 성역할 고정관념척도($r=.43$) 및 성역할척도에서 남성성($r=.34$)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역할척도의 여성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대인간 폭력수용척도는 성역할 고정관념척도($r=.28$) 및 성역할척도의 남성성($r=.18$)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성역할척도의 여성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p>.10$).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는 성역할척도의 여성성과 상관이 없었다.

성행동과의 상관. 다른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위하여 27가지 성행동의 내적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95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평균 빈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강간통념척도와 대인간 폭력수용척도는 성행동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척도는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r=.23$)이 있었다. 성역할척도의 하위요소인 남성성과 여성성은 성행동과 각각 다른 상관을 보였다. 남성성은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29$)을 보였으나 여성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s.*).

성폭행과의 상관. 조사대상자가 성폭행을 해본 빈도는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들 3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2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평균 빈도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강간통념척도와 대인간 폭력수용척도는 성폭행과도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r=.33$ 과 .27).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척도는 성폭행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p>.10$). 앞서 성행동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관계성과 같이 성역할척도에서 남성성은 성적 공격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나 여성성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과 성폭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70$).

강간통념과 성행동 및 성폭행과의 관계

성행동의 구조. 본 연구에서 조사한 27가지 성행동

표 2. 다른 척도 및 행동과의 상관관계

척도	대인간 폭력수용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성	여성성	성행동	성폭행
강간통념	.58***	.43***	.34**	.07	.47***	.33***
대인간 폭력수용	-	.28**	.18*	.04	.41***	.27**
성역할 고정관념		-	.27**	-.03	.23*	.17
남성성			-	.30**	.29**	.30**
여성성				-	.02	-.09
성행동					-	.70***

* $p<.05$. ** $p<.01$. *** $p<.001$.

표 3. 성행동의 요인분석 결과

성 행 동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이성의 옷을 벗겨보았다	.90	.31			
이성의 가슴을 만졌다	.89				
이성의 성기를 만져 보았다	.86	.32			
키스를 하며 상대의 입에 혀를 넣어 보았다	.85				
이성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벼 보았다	.82				
이성과 혼숙을 하였다	.79	.31			
이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72	.52			
이성과 성행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70	.28	.29		
이성이 동의하는 성관계를 가졌다	.69	.51			
이성을 유혹하는 말을 해보았다	.66	.49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드러내 보였다	.55	.46			
모르는 이성을 안아보았다		.81			
모르는 이성과 키스를 하였다	.31	.78			
이성과 동거를 하였다	.35	.72			
성행위하는 소리를 내어 보았다		.63			
음란비디오를 보았다	.30	.56			
타인이 옷을 벗는 것을 훔쳐보았다	.28	.53			
벌거벗은 채로 혼자 방에서 누워보았다	.32	.47			
야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였다	.27	.44			
이성과의 성행위를 상상해 보았다	.27		.75		
혼자 성행위를 흉내내었다			.65		
바지나 치마위로 성기를 만져보았다	.31	.62		.27	
손으로 자위를 하였다		.61			.49
인형들을 가지고 성행위를 모방하였다				.83	
공공장소에서 이성이나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34	.27	.27	.60	
음란서적을 보았다				.35	.70
물건을 가지고 자위를 하였다				.53	.69
Eigenvalues	12.14	2.39	1.56	1.26	1.13
설명변량	45.0	8.9	5.8	4.7	4.2
Cronbach's α	.96	.88	.70	.44	.55

은 높은 내적 일치도($\alpha=.95$)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성행동이 단일구조로 되어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하위요인들이 서로 높은 상관관을 보이면서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내적 일치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성행동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varimax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고 scree plot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른 요인분석 결과 5개 요인이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 요인은 전체변량의 68.5%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별로 유의미하게 부하되는 성행동에 대한 결정은 조사대상

자수를 고려하여 .25로 하였다(Stevens, 1996).

첫 번째 요인에는 모두 20개의 행동이 기준치인 .25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다. 이들 성행동 가운데 ‘이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성이 동의하는 성관계를 가졌다’ 등은 요인II에도 .5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으나 요인 I에 부하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요인II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11개 행동이 요인 I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인 I에 속한 성행동은 ‘이성의 옷을 벗겨보았다’, ‘이성의 가슴을 만졌다’, ‘이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성과 성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표 4. 강간통념과 행동의 상관관계

강간통념	성행동					전체	성폭행
	적극적 성행위	탐색적 성행위	상상적 성행위	성행위 모방	음란물 관람		
피해자의 성경험	.33***	.42***	.19*	.26***	.22*	.38***	.31***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41***	.38***	.23*	.30***	.15	.42***	.27**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31***	.35***	.13	.15	.15	.32***	.25**
피해자의 경솔	.23	.18	.14	.08	.10	.20*	.09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15	.17	.09	.08	.17	.17	.06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35***	.34***	.26**	.24**	.19*	.39***	.29**
전체	.45***	.47***	.25**	.29**	.23*	.47***	.33***

* $p < .05$. ** $p < .01$. *** $p < .001$.

등과 같이 이성과의 적극적인 언어적 및 행동적 접촉을 나타내므로 '적극적 성행위'로 해석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변량의 45%를 설명하였다.

요인II에는 모두 8개의 성행동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인 성행동은 '모르는 이성을 안아보았다', '모르는 이성과 키스를 하였다' 등이었고 가장 낮은 부하량을 보인 성행동은 '야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였다'였다. 이들 8개 성행동은 요인I에 속하는 행동보다는 모르는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모험적이고 능동적 성행동을 포함하므로 '탐색적 성행위'로 해석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변량의 8.9%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유의미한 나머지 세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5% 내외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III은 성행위에 대한 상상, 성행위 흉내, 자위 등을 나타내므로 '상상적 성행위'로 해석하였다. 나머지 두 요인에는 각각 2개의 성행위가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요인IV는 '성행위 모방', 그리고 마지막 요인은 '음란물 관람'으로 해석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앞의 세 요인은 내적 일치도가 .70 이상으로 적절하였으나, 마지막 두 요인은

7) 각 요인에 부하된 성행동을 살펴보면, 요인I과 요인II는 구체적인 성행위, 요인III은 상상적 성행위, 요인IV와 요인V는 매개물을 이용한 성행위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행동의 5개 하위요인은 이들 세 가지 상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성행동이 위계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검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분석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결과를 간결히 제시하기 위하여 제외시켰다.

각각 .44, .45로 내적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다.

강간통념과 행동의 관계. 강간통념을 구성하는 6개의 하위요인이 성행동과 성폭행의 5개 하위요인 및 성폭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표 4참고). 전체 강간통념은 성행동의 5개 하위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 < .001$). 강간통념의 하위요인과 전체 성행동의 관계를 보면,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을 제외한 5가지 강간통념들은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모두 $p < .001$): 피해자의 성경험($r = .38$), 여성 행동에 대한 오해($r = .42$),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r = .32$), 피해자의 경솔($r = .20$) 및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에 대한 통념($r = .36$).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경솔과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통념의 하위요인과 성행동 및 성폭력의 각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면, 피해자의 성경험, 여성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및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이 조사대상자의 성행동 및 성폭행 경험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p < .01$). 또한,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에 대한 통념은 이성과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 성행위($r = .31$)와 탐색적 성행위($r = .35$)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솔과 피해자의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통념은 성행동의 하위요인들과 상관이 없었고 성폭력의 경험빈도와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집단간 차이

강간통념. 조사집단간에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강간통념을 구성하는 6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집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변인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Wilks's Lambda=.86, $F(6, 108)=3.04, p=.009$.

일원후속변량분석은 6개의 하위강간통념 가운데 4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5 참고). 죄수는 대학생보다 강간피해자는 이전에 성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M=4.20$ 과 3.12),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하며($M=5.21$ 과 4.13), 성폭행 피해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M=5.92$ 와 4.99),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을 높게 지각($M=4.08$ 과 3.25)하였다. 그러나 강간을 당하는 피해자 행위를 경솔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거나 피해자 자신의 행위를 허위조작하기 위하여 강간을 보고한다는 통념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1.0$).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표 5. 집단간 강간통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강간통념	대학생	죄수	$F(6, 108)$
피해자의 성경험			10.48**
M	3.12	4.20	
SD	1.60	1.99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12.46***
M	4.13	5.21	
SD	1.46	1.84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8.13**
M	4.99	5.92	
SD	1.34	2.13	
피해자의 경솔			2.57
M	5.81	6.44	
SD	1.76	2.47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2.06
M	4.23	4.74	
SD	1.75	2.05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7.74**
M	3.25	4.08	
SD	1.47	1.73	

주. 1=아주 반대, 9=아주 찬성.

* $p<.05$. ** $p<.01$. *** $p<.001$.

피해자의 경솔에 대한 통념을 가장 깊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강간통념에 대한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집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학생($M=4.15, SD=1.09$)은 죄수($M=5.06, SD=1.40$)보다 강간통념을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13)=15.45, p=.000$.

성행동. 조사집단간에 성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행동의 5개 하위요인에 대한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집단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Wilks's Lambda=.52, $F(5, 109)=19.83, p=.000$. 일원후속변량분석은 5개 하위행동요인 가운데 3개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죄수는 대학생보다 적극적 성행위($M=1.86$ 과 $.95$)와 탐색적 성행위($M=1.17$ 과 $.40$)를 많이 하고 성행위를 모방하는 행동($M=.39$ 와 $.17$)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상상적 성행위와 음란물 관람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성행

표 6. 집단간 성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강간통념	대학생	죄수	$F(5, 108)$
적극적 성행위			27.59***
M	.95	1.86	
SD	.87	.92	
탐색적 성행위			50.67***
M	.40	1.17	
SD	.33	.79	
상상적 성행위			.85
M	1.56	1.43	
SD	.70	.89	
성행위 모방			5.32*
M	.17	.39	
SD	.36	.66	
음란물 관람			
M	.99	1.09	.37
SD	.83	.88	

* $p<.05$. ** $p<.01$. *** $p<.001$.

위를 흉내내거나 상상하고 자위를 하는 등의 상상적 성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체적으로 집단간에 성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성행동에 대한 응답자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죄수($M=1.43$, $SD=.78$)는 대학생($M=.82$, $SD=.49$)보다 성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F(1, 113)=25.90$, $p=.000$.

성폭행. 성폭행을 한 경험에 있어서 조사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폭행을 나타내는 3개의 행동에 대한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조사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Wilks's Lambda=.74, $F(3, 113)=13.24$, $p=.000$. 다음으로 후속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성폭행 항목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고). 죄수는 대학생보다 이성을 희롱하거나($M=.94$ 와 $.49$),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M=1.06$ 과 $.24$)와 키스($M=.92$ 와 $.06$)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진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전체적으로 두 집단간에 성폭행을 한 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폭행에 대한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죄수들($M=.97$, $SD=.97$)은 대학생($M=.26$, $SD=.42$) 보다 성폭행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F(1, 115)=28.82$, $p=.000$.

강간통념과 성행동의 관계. 조사대상인 대학생과 죄수에 따라서 강간통념과 성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

8) 참가자의 성폭행 경험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혀 없다”(1점), “1~2회”(2점), “3~5회”(3점), “6~8회”(4점), “9~10회”(5점), “10회 이상”(6점)과 같이 빈도 간격을 세분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폭행의 경우 대학생과 죄수의 경험은 .06점에서 1.06점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표준편차는 .24에서 1.14까지 분포되어 있다. 특히 죄수의 경우,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다(표 7 참고). 따라서 빈도 간격의 세분화는 참가자의 성폭행 경험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7. 집단간 성폭행의 평균과 표준편차

	강간통념	대학생	죄수	F(3, 113)
이성을 희롱함				6.42*
M		.49	.94	
SD		.81	1.14	
여성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함				27.24***
M		.24	1.06	
SD		.53	1.12	
여성 원하지 않는 키스를 함				39.91***
M		.06	.92	
SD		.24	1.07	

* $p<.05$. *** $p<.001$.

표 8. 강간통념과 성행동과의 상관관계

	강간통념	대학생	죄수
전체 통념점수		.42**	.37*
피해자의 성경험		.33*	.30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48**	.31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26	.25
피해자의 경솔		.24	.25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07	.08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24	.33

* $p<.05$. ** $p<.01$.

였다. 표 8에서 보듯이 대학생의 경우 피해자의 성경험에 대한 통념과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는 대학생의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33$ 과 $.48$, $p<.05$). 다른 통념들은 대학생의 성행동과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죄수의 경우 강간통념의 총점수는 그들의 성행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하위통념들과 성행동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p>.05$).

강간통념과 성폭행의 관계. 표 9에서 보듯이 대학생의 경우 전체 통념점수는 그들의 성폭행과 정적인 상관($r=.33$, $p<.05$)이 있었으나 죄수의 경우 상관이 없었다. 하위통념별로 보면, 대학생의 경우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와 성폭행 피해의 허위조작에 대한 통념은 그들의 성폭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34$, $.29$, $p<.05$). 다른 하위통념들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수의 경우, 강간통념과 하위통념들은 각각 그들의 성폭행 빈도와 유의미

표 9. 강간통념과 성폭행과의 상관관계

강 간 통 념	대학생	최 수
전체 통념점수	.33*	.19
피해자의 성격형	.17	.26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34*	.17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29*	.12
피해자의 경솔	.21	-.08
강간에 대한 허위조작	.06	.00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24	.20

* $p < .05$. ** $p < .01$.

한 상관이 없었다($p > .10$).

논 의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간에 대한 그릇된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강간통념척도가 높은 내적일치도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다. 타당도는 강간통념척도와 다른 척도들간의 상관분석과 아울러 조사대상자의 성행동 및 성폭행과의 상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강간통념척도와 다른 척도간의 상관분석은 강간통념척도가 변별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강간통념은 성행동 및 성폭행과 정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강간통념척도는 대인간 폭력수용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로 보면, 강간통념에는 성 관련하여 폭력을 수용하는 신념이 함축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 결과는 Burt (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강간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서 폭력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간통념척도는 성역할척도의 남성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대인간 폭력수용척도도 남성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 그 크기는 미약하여 두 척도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자가 기대한 바와 같이 성역할 고정관념척도는 강간통념척도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Burt, 1980; Feild, 197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실생활에서 여성의 성역할과 행동특성에 대해서 고정관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적도는 성역할척도에서의 남성성과도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상관의 정도는 높지 않았다.

다른 척도와의 상관분석결과로 보면 강간통념은 대인간 폭력수용, 성역할 고정관념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강간통념과 대인간 폭력수용은 성행동 및 성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행동별로 상관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두 척도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증거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강간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행동과 정적인 상관(각각 $r = .47$ 과 $.29$)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상관의 정도를 차이 검증한 결과를 보면 강간통념이 성역할 고정관념보다 성행동과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_{diff} = 2.55, p < .05$). 그리고 강간통념은 조사대상자의 성폭행 경험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성역할 고정관념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강간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보이는 것이다. 강간통념척도는 변별타당도 뿐만 아니라 높은 예언타당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언타당도에 대한 검증은 강간통념척도와 타당도의 기준변인으로서 성행동 및 성폭행간의 상관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강간통념척도가 성 관련 두 행동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간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성행동과 성폭행을 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남성주도의 성역할에 대한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Muehlenhard & Linton, 1987), 체포되지 않는 경우 강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남자들 보다 강간통념을 더 수용하였다(Malamuth, 1981)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강간통념과 성행동의 각 하위구성요소들 간에 나타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표4 참고), 강간통념은 다른 성행동들보다 행동이 개입되는 적극적 성행위 및 탐색적 성행위와 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다(모두 $r=.30$ 이상). 특히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를 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타인과의 성적 접촉이 있는 적극적 및 탐색적 성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하위강간통념들은 성행동의 하위구성 요소들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강간통념 가운데, 피해자의 성격형,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 및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에 대해서 그릇된 통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성행동과 성폭행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하위 강간통념들이 서로 다른 하위 성행동 및 성폭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성역할척도에서 남성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였다. 이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성격특성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고정관념이 강간통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대인간 폭력수용척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척도는 성역할척도에서 남성성하고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각각 $r=.18$ 과 $.27$)이 있었고 강간통념척도와도 정적 상관(강간통념과 대인간 폭력수용 $.58$, 강간통념과 성역할 고정관념 $.43$)이 있었다. 이 결과는 성격특성으로서 남성성이 강할수록 대인관계에서 폭력의 사용을 수용하는 편이며 여성의 성역할과 행동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강간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성역할척도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정적 상관($r=.30$, $p<.01$)을 보였으나 남성성만이 성행동 및 성폭행과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남성성이 독특하게(unique) 성관련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남성지배적인 사회구조에서 강간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행위이며 힘의 표현이라는 주장(Brownmiller, 1975)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강간통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강간통념이 6개의 하위요소(즉, 피해자의 성격형, 여성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책

임귀인, 피해자의 경솔, 피해자의 강간 정당화, 및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강간통념과 다른 성 관련 태도 또는 인적특성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연구는 있었으나, 강간통념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같은 조사응답자로부터 재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강간통념구조의 신뢰성은 추후 연구에서 다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과 죄수간에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하위강간통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죄수는 대학생에 비해서 강간피해자가 성격형이 많고, 여성의 행동을 오해하고 강간을 당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 여성에게 음란한 심리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피해자의 경솔함이나 피해자가 전략적으로 강간피해를 보고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에 사교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간통념이 사회계층에 따라서 분화되어 차별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흥미있게도 죄수가 대학생보다 피해자의 성격형,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 성폭행 피해의 허위조작, 피해자의 음란성과 출신배경 등에 대해 그릇된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대학생과 비교해 이러한 통념이 성행동이나 성폭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죄수의 경우 이러한 하위통념들은 성행동 및 성폭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생의 경우, 죄수보다 그러한 하위통념들은 적게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통념을 많이 가진 학생일수록 성행동을 많이 하며, 성폭력을 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간 피해자의 성격형에 대한 통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성행동을 많이 하였고, 성폭행 피해의 책임귀인에 대한 통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성폭력의 빈도가 높았다. 특히, 여성의 행동에 대한 오해는 공통적으로 대학생의 성행동 및 성폭력 경험과 밀접히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죄수와 대학생의 경우, 강간통념과 성 관련 행동과의 관계에 내재하는 심리적 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강간통념은 어떤 조건하에서 성폭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Scully와 Marolla(1985)는 114명의 강간범을 면접한 결과, 그들

의 성범죄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강간범들은 복수와 처벌,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범행, 성적 욕구충족, 힘과 영향력을 행사, 모험을 즐기려고,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와 같이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성폭행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폭행은 다양한 동기를 충족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연구는 성폭행이 가지는 가치가 어떤 동기를 충족시키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간통념과 성행동 지표의 상관에서 나타난 죄수와 대학생간의 차이에 대한 한가지 해석은 성폭행의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s)가 죄수와 대학생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죄수의 경우, 강간통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와 성폭행 여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력범에 의한 성범죄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범죄자들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와 같은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 참여한 죄수는 강간, 성폭력, 강도강간인 6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폭력, 강도상해, 상해치사, 절도 등의 전과자로서 대부분 성폭행을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대학생의 경우, 성적 욕구의 충족 그 자체가 이성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목적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성폭행의 목적이 성적욕구 충족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Warshaw, 1988).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면, 성폭행의 도구적 가치가 두 집단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성폭행이 가지는 도구적 가치 여부와 강간통념의 영향력은 함수 관계에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성폭행의 도구적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는 강간통념이 성폭행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죄수 가운데 성폭행을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강간통념과 성폭행 경험 간에는 높은 상관이 나타날 것이다.

다른 해석은 이성간의 친밀도가 조사대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대학생의 경우 성행동이나 성폭행 대상이 되는 여성은 전혀 안면

이 없는 여성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4개 대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경험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대생 10명 가운데 6명이 언어적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고 신체적 성폭행과 성희롱을 당한 비율도 높았다. 특히, 성폭력의 가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25.8%)보다 피해자가 알고 있고 선배와 후배같이 가까운 사이(43.8%)가 가장 높았고 교직원에 의한 경우도 많았다(한겨레신문, 1998). 이성간에 신분이 분명하고 친밀한 관계인 경우, 친밀도에 따라서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성적 접촉이 수용되는 정도는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자는 여자의 행동이 저항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공격적이라는 사실도 또한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가해자와 당사자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Koss et al., 1988; Warshaw, 1988). 이성간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데이트 중에 폭행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te, Henton, Koval, Christopher, & Lloyd, 1982). 이러한 결과로 보면, 강간통념이 성행동과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이성간의 친밀도와 함수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성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강간통념이 성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친밀도를 무선변인으로 두었고 이 변인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과 죄수의 성폭행 빈도와 강간통념간의 관계성 차이가 조사대상과 이성간의 친밀도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은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위의 두 가지 해석은 가능한 추론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앞으로 조사대상 집단간에 강간통념과 행동변인을 매개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밝히는 연구가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간통념을 기초자료로 강간통념 항목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대부분 외국자료를 참고하여 강간통념수용척도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강간통

념수용척도가 가지는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강간통념과 행동에 대한 분석자료가 조사대상자의 자기보고식 방법에 의해 얻어진 조사결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제기될 수 있다(Catania, Gibson, Chiwood, & Coates, 1990). 향후 성행동과 성폭력에 대한 자료수집시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호감도 등에 따른 응답오차를 최소화하는 측정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재상(1994).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82-92.
- 통계청(1998).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 한겨레신문(1998). 여대생 60% '언어적 성폭력' 경험. 1998년 10월 14일자.
- Andersen, B. L., & Broffitt, B.(1988). Is there a reliable and valid self report measure of sexual behavior.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7, 509-525.
- Berkowitz, L.(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 Hall.
- Berry, D. B.(1995). The domestic violence sourcebook. Chicago: Contemporary Books.
- Bowker, L.(1979).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women.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4, 371-384.
- Brownmiller, S.(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 Schuster.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1997).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7*.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Justice.
- Burgess, A. W., & Holmstrom, L. L.(1979). Rape: Sexual disruption and recove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9, 648-657.
- Burt, M. R.(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atania, J. A., Gibson, D. R., Chitwood, D. D., & Coates, T. J.(1990). Methodological problems in AIDS behavioral research: Influences on measurement error and participation bias in studies of sexu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8, 339-362.
- Cattell, R. B.(1966). The meaning and strategic use of factor analysis. In R. B. Cattell (Ed.), *Handbook of Multivariate Experiment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 Ellis, L.(1991). A synthesized (Biosocial) theory of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631-642.
- Feild, H. S.(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56-179.
- Fitzerald, L. F.(1993). *The last great open secret: The sexual harassment of women in the workplace and academia*. Washington, DC: Federation of Behavioral, Psychological and Cognitive Sciences.
- Foa, E. B., Rothbaum, B. O., & Steketee, G.(1987). Treatment of rape victi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 256-276.
- Groth, N.(1979). *Men who rape*. NY: Plenum.
- Kilpatrick, D. G., Saunders, B. E., Amick-McMullan, A., Best, C. L., Veronen, L. J., & Resnick, H. S.(1989). Victim and crim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crime-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Behavior Therapy*, 20, 199-214.
- Koss, M. P., Dinero, T. E., Siebel, C., & Cox, S. (1988). Stranger, acquaintance, and date rape: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victim's experi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1-24.
- Koss, M. P., Goodman, L. A., Browne, A., Fitzgerald,

- Keita, G. P., & Russo, N. F.(1994). *No safe haven: Male violence against women at home, at work, and in the communi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wis, L., & Johnson, K. K. P.(1989). Effect of dress, cosmetics, sex of subject, and causal inference on attribu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 22-27.
- Lisak, D.(1991). Sexual aggression, masculinity, and fathers.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6, 238-262.
- Malamuth, N. M.(1981). Rape proclivity among males. *Journal of Social issues*, 37, 138-157.
- Muehlenhard, C. L., & Linton, M. A.(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34, 186-196.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Scully, D., & Marolla, J.(1985). "Riding the bull at Gilley's": Convicted rapists describe the reward of rape. *Social Problems*, 32, 251-262.
- Stevens, J.(1996).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3r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Warshaw, R.(1988). *I never called it rape*. New York: Harper & Row.
- Zuckerman, M.(1973). Scales for sexual experience for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27-29.

부록. 성에 대한 태도 관련 척도

대인간 폭력수용척도

1. 현대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생활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남자가 여자를 거칠게 다룰 때, 많은 여자는 성적 자극을 느낀다.
3. 많은 경우 여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보일 까봐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척하지만, 실은 남자가 강압적이기를 바란다.
4. 때때로 남자가 냉담한 여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5.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6.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면, 그 아내는 그 집을 떠나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척도

1. 남자는 함께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모욕을 당하다면 그 남자와 싸워야 한다.
2. 여자는 결혼할 때, 처녀여야 한다.
3.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싶지 않다는 여자는 문제가 있다.
4.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을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5. 여자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여성스러움을 이용하여 얻는 편이 낫다.
6. 여자가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7. 남자가 술에 취해있는 것보다 여자가 취해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다.
8. 여자 혼자서 주점에 간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9. 여자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괜찮다.

Development of a Rape Myths Scale

Suk-Jae Lee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a) to develop a Rape Myths Scale by revising the Burt's Rape Myths Acceptance Scale (Burt, 1980) and including more rape myths, (b) to asses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new scale, and (c) to examine the underlying nature of rape myths. Data collected from male undergraduate students and incarcerated criminals showed that (a) a Rape Myths Scale is highly reliable and valid, and (b) rape myths consist of 6 factors: Victim's sexual experience, misperception of woman's behavior, attribution of rape responsibility, victim fabrication, and victim pleasur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ly correlated relationships between rape myths and sexual behavio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Undergraduate students differed from the criminals in that relationships. In the undergraduate students, victim's sexual experience, misperception of woman's behavior, and attribution of rape responsibilit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xual behaviors. However, the relationships were not obtained in the incarcerated criminal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psychological processes involved in the relation between rape myths and sexual behaviors are different across the two respondent groups. Discussion focuses on the plausible underlying psychological processes between rape myths and sexual behaviors.